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월 8일, 이광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4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4.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사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이광희)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영리목적·상습적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중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영리목적의 위반인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을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만, 위반건축물 위반 정도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만큼 이행강제금 가중 범위를 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이종욱)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